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강승규 · 주호영
김정재 · 김은혜 · 조정훈
이양수 · 김재섭 · 조경태
최수진 · 이종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전주의 노후화, 안전성 저하,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,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,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·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,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3 신설 등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1호 중 “사업”을 “사업과 제72조의3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 사업”으로 한다.

제72조의2제1항 중 “전주와”를 “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주와”로 한다.

제7장에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3(전주의 철거 등) ① 전기사업자는 제72조의2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주(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)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철거하거나 지중이설하여야 한다.

1.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전주
 2.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전도 위험이 있는 전주
 3.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전주
 4.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전주
- ②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 1. ~ 10의2. (생략) 11.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. (생략) 제72조의2(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(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)의 지중이설(이하 “지중이설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9조(기금의 사용) ----- ----- ----. 1. ~ 10의2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-----사업과 제72조의3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 사업 12. (현행과 같음) 제72조의2(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) ① ----- -----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주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72조의3(전주의 철거 등) ① 전</u>

기사업자는 제72조의2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주(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 선로설비를 포함한다)는 관할 지장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철거하거나 지중이설하여야 한다.

1.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전주

2.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전도 위험이 있는 전주

3.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전주

4.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전주

②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